

>>> 한국과 일본의 지역자치 단체별 지식재산관련 지원제도 소개



안 현 수
특허정보전략팀



김 기 현
조사분석2팀

1. 서론

P. Krugman은 글로벌시대에 있어 산업경쟁력의 중심은 국가경제가 아니라 지역적 직접 경제라고 주장하였으며, Lundvall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이 고객-기업 또는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상호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런 상호학습에서는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 국가들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중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지역혁신이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¹⁾ 본 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지적재산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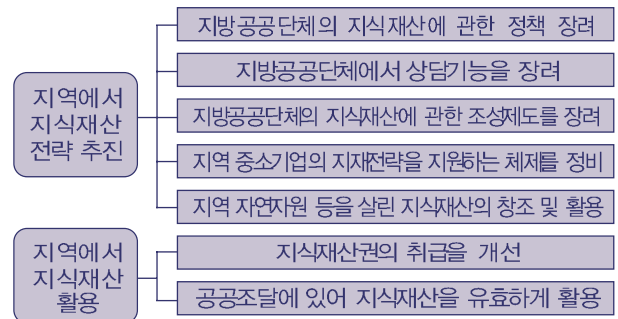
이 중 일본의 내용은 2006년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매뉴얼」에서 일부를 발췌하였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산 관련 지원정책은 website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2. 일본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2005년에 발간한 「지적

재산(지식재산) 추진 계획 2005」의 내용 중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진흥한다”는 지침을 주 골자로 하여 전국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 을 세우고 지역 중소기업 등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진흥



(1) 지역에서 지식재산전략 추진

① 지방공공단체의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장려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역의 매력 있는 콘텐츠를 살려, 그들의 권리화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지식재산전략의 정책을 장려한다. 또한, 각 지역의 대학과 지방공공단체간 밀접한 제휴를 통해 지역에서 지재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재산의 전략 책정에 대한 정보공유나 지식재산정책의 공동조사연구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하는 등의 지방공공단

¹⁾ 특허청,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연구, 2006

체의 정책을 장려한다.

- 지역의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를 동경 그 외 지역의 기업이나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지식재산전략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장려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에서 상담기능을 장려

- 일본 전국 각 지역에 지식재산에 관한 센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권의 취득 방법이나 특허정보의 검색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지식재산의 취급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전국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선행사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을 장려한다.

③ 지방공공단체의 지식재산에 관한 조성(助成)제도를 장려

- 동경이나 오오사카부 등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독자 사업으로서 외국특허출원, 해외 모방품, 해적판 대책에 관한 조성, 변리사 비용의 조성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성의 중요성에 더하여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선행사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을 장려한다.

④ 지역 중소기업의 지재전략을 지원하는 체제장비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의 전략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경제산업국마다 「지역지재전략본부」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산업 또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지역지재전략추진계획」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동 계획에 기초하여 인재 database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의 지재 관계 기관이나 인재의 네트워크 등을 강화한다.

⑤ 지역 자연자원 등을 살린 지식재산의 창조 및 활용

- 자연자원(해양생물, 중간식물 등)에는 유효성분이나 유용한 유전자를 포함한 자원이 많이 있다. 각 지역별 대학 및 기업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자연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행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으로서 권리 취득 및 이를 활용한 신제품, 신사업의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2) 지역에서 지식재산을 활용

①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식재산권의 취급 개선

- 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도 계약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허허락 운용의 수정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취급에 대

하여 제도 정비나 운용의 개선을 행하도록 한다.

② 공공조달에 있어 지식재산을 유효하게 활용

- 관공서 수요계약에서 제품구입의 목적이 합리적일 때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적인 조달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용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전략

| 지역 | 지식재산전략 | 시 기 |
|-------|---------------------|---------|
| 동경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용을 위한 전략 | 2004. 3 |
| 홋카이도 | 홋카이도 지식재산 전략추진방침 | 2004. 6 |
| 오오사카 | 오오사카 지식재산 전략지침 | 2004. 2 |
| 아키타현 | 아키타현 지식재산 전략 | 2004. 3 |
| 후쿠시마현 | 후쿠시마 지식재산 전략 | 2005. 2 |
| 이바라키현 | 이바라키 지식재산 전략 | 2005. 2 |
| 도치키현 | 도치키 지식재산활용성화추진 방책 | 2005. 3 |
| 군마현 | 군마 지식재산전략 | 2005. 3 |
| 사이타마현 | 사이타마현 지식재산전략 | 2005. 3 |
| 후쿠이현 | 후쿠이현 지식재산활용 프로그램 | 2005. 3 |
| 아이치현 | 아이치 지식재산창조 플랜 | 2004. 3 |
| 시마네현 | 시마네현 지식재산활용전략 | 2003. 3 |
|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농산물 지식재산 전략 | 2003. 3 |
| 나가사키현 | 나가사키현 지식재산 전략 | 2005. 3 |

(1) 동경

동경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련된 활용전략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동경도 지식재산활용본부」를 2003년 4월에 설치하고 아울러 민간으로부터 지식재산의 전문가를 「동경도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행함과 동시에 도의 지식재산의 활용전략의 구축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경도지식재산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재)동경도중소기업 진흥공사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 제조 노하우,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으로의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지식재산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경도지식재산종합센터와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장의 표와 같다.

(2) 아이치현

아이치현에서는 지식재산을 기초로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분야 전개 및 신산업의 창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입현」을 산업정책의 큰 축으로 하고, 산·학·관이

| 구 분 | 주요 사업 | 활동 내용 |
|-----------------|-----------------------|---|
| 동경도지식 재산총합센터 | 지식재산 일반상담 |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는 전문가가 응한다. |
| | 라이선스계약 상담 | 지식재산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 등 여러 가지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행한다. |
| | 소송상담 |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상담에 응하고 어드바이스를 행한다. |
| | 기술상담 |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사가 상담에 응한 후 필요에 따라 현지를 방문하고 어드바이스를 행한다. |
| | 포럼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의 보급, 계몽을 위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
| 중소기업 | 특허정보제공 |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행한다. |
| | 특허유통 지원 | 특허유통 어드바이저가 기업 대학 등의 미 이용 특허를 원활하게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행한다. |
| | 특허정보의 열람 | 특허전자도서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 | 특허정보의 제공 | 특허전자도서관이 제공하는 기술정보를 정리, 분석, 가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제공한다. |
| | 특허정보의 상담 | 특허전자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상담을 행한다. |
| 지적재산의 일반상담 | 폭넓게 지식재산에 관한 상담을 행한다. | |

연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치현지식재산전략회의」를 2003년 6월에 설치하고, 동회의 워킹그룹(WG)에 의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실시하면서 지식재산 입현을 위한 지침이면서 행동 계획이 되는 「아이치 지식재산장조플랜」의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과 이를 창출하는 기술,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를 확대하고, 「제조」와 「지혜」가 집적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규사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출을 유도하여 왕성한 지역 조성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이 인재, 정보 및 자금 측면의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인재 : 지식재산 인재서포터
- 정보 : 선형기술조사기능의 정비, 지재정보의 네트워크화
- 자금 : 투자펀드, 보조제도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왕성한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별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창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며, 해외특허취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3) 오오사카

오오사카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종 상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나 지식재산관련 상담 대응 등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 등 다양한 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등이 취하는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하며 이는 세부적으로 지식재산

마인드 향상 전략, 지식재산 사업화서포트 전략 및 지식재산 이전 활용촉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지식재산 마인드 향상 전략

자사기술에 관한 인식과 특허제도의 정확한 지식을 갖는 중소기업 등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경영자의 특허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 등의 교육을 통해 「경영자의 특허 마인드 향상」, 중소기업 등에서 활약하는 특허 사업화를 위한 실무적인 전문인재의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전문인재의 육성 지원」 및 특허를 시작으로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관한 전문 특화형의 상담 처리를 조성하는 「특허 사업화를 위한 전문상담」을 추진한다.

② 지식재산 사업화서포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노하우를 갖는 중소기업 등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특허 사업화를 위한 전문상담」, 특허 사업화에서 각종과제 해결에 대응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재를 활용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외부 전문인재를 활용한 지원체제의 정비」 그리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전개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관리의 지원」을 실시한다.

③ 지식재산 이전 활용촉진전략

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로 진행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지원」, 유망한 휴면특허의 사업화를 네비게이트하여 중소기업 등으로 이전토록 지원하는 「휴면 특허의 이전 활용 지원」, 개방특허 등을 활용한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나 시작품 제작 등 중소기업 등이 행하는 신제품 개발 진행에 대해 지원하는 「개방특허의 사업화 지원」을 실시한다. 다음 표는 오오사카에 위치한 지식재산관련 지원기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 지식재산지원기관 | 사업 개요 |
|------------------------------------|---|
| 오오사카 TLO | 오오사카대학, 오오사카산업대학, 오오사카시립대학 등 8개 대학 내에 대학 사업부문을 설치하고 전속 코디네이터(민간기업의 기술부문 출신의 OB)를 배치하였다. 이들은 대학과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회원기업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
| (사)발명협회 오오사카 지부 | 우수한 발명에 대한 표창이나 무료 각종 강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발명이나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상담, 온라인 전자출원의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 오오사카부립 특허정보 센터 |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지역도서관의 특허자료부문을 계승한 특허정보 센터는 특허정보의 수집 및 제공처 역할을 수행하여 특허청에 의해 지식재산권센터 인정을 받았다. 서면 전자모사 양방의 국내외 특허공보를 정리해 열람제공하고 또한 특허출원 인큐베이션 기능을 갖는 "patent lab"이나 검색지도 어드바이저의 파견 등의 지원하고 있다. |
| (재)일본입지센터- 테크노마트 사업부 오오사카 지부 | 기업간, 지역간 기술교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회원제의 기술 거래 사업을 수행하였다. 1997년부터 특허청 위탁 사업인 특허유통촉진사업으로서 기술 거래 시장의 구축과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
| 킨키경제산업국 특허실 | 1999년부터 지식재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정인인 변리사를 통해 특허무료 상담이나 강연회, 강습회, 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 오오사카 열람실 | 공업소유권 공보를 입수하여 이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업소유권의 보호 및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PDL전용단말 등에 의해 공보 등의 열람업무를 하고 있다. |
|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의 특허유통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도부현의 지식소유권 센터나 TLP에 파견된 지식재산권과 그 유통에 관한 전문가, 기업 등의 연구 개발이나 지식재산부문에서 15년 이상 근무경험을 갖는 인재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공적연구기관, 대학이 갖는 특허의 지역산업계로의 이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

※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매뉴얼」, 대한변리사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4) 나가노현

나가노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허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 특허지원시책 | 관련시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유통지원 사업 특허정보 활용지원사업 특허 컨설턴트 파견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비 등 보조금 제휴지원 |

① 특허유통지원 사업

나가노현에서는 2000년부터 특허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초에 특허유통 어드바이저는 1명이었으나 2004년부터 총 2명 체제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나가노현이 남북으로 긴 지리적 요인에 의해 기업방문이나 기업간 이동 시간을 요하고 또한 제조업의 집적이 높은 중심 남신 지역으로의 지원이 부족하여 증원하게 되었다. 이로써 각 지역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② 특허정보 활용 지원 사업

특허정보검색 어드바이저는 2003년까지 1명 배치하고 있었으나 상당전수의 증가로 인해 2004년부터 1명 증원하여 2명 체제로 하고, 방문지도, 강연 등을 실시, 중소기업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가노현에서는 나가노시에 소재하는 발명협회 나가노현 지부를

지식소유권 센터로 하고 특허정보 활용 지원 어드바이저와 앞서 말한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를 배치하고 있다.

③ 특허 컨설턴트 파견 사업

나가노현은 2003년부터 「특허 컨설턴트 파견 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적재산권부문의 OB 나 변리사 등을 특허 컨설턴트로서 등록하고 기업에서 파견 요청에 따라 출장을 통해 특허화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 성과 발굴, 특허절차 상담 조언, 기타 지재 전반에 관한 조언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에 담당하고 있다. 이 파견 활동의 결과 특허출원에 관한 안건이 증가되고, 출원준비 단계의 안건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특허후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와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형 기업에 특허정보의 제공 혹은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특허도입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이나 사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그 외, 2005년 사업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가칭)지식재산 세미나 와 개발형 기업 그룹 등으로의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서 「(가칭)지식재산출전강좌」를 실시하여 특허의 창조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급 개발과 중소기업 그룹 단위에서의 지재에 관한 과제 해결을 도모하고 특허의 창출을 지원한다.

④ 기술개발비 등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개발의 지원으로서 시제품 제작개발에 관한 비용 일부(1/2내외)를 보조하는 제도로 대상경비로서 원재료, 기계기구비, 외주가공비의 특허출원비용 등도 대상으로 하고 시제품 제작에 동반하여 지식재산의 확립을 지원한다.

⑤ 제휴지원

(재)나가노현 중소기업 진흥공사의 어드바이저, 특허관계 어드바이저 및 특허 컨설턴트가 제휴하여 상품기획 및 판로개척에 약하거나 미착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기획, 특허(상표), 판로개척 등의 사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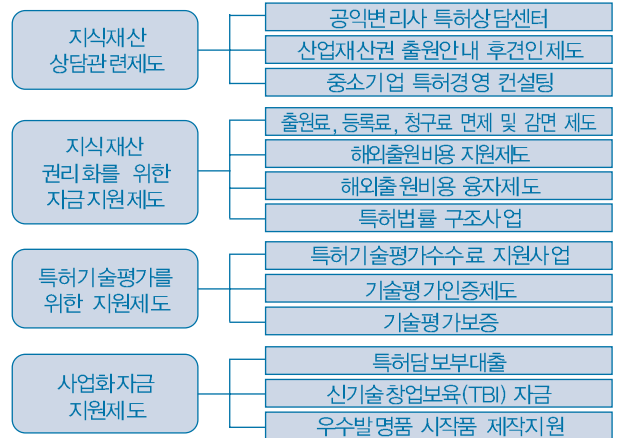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기술개발비 등 보조금을 이용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특허 컨설턴트가 특허화를 조언한다. 또한 특허 정보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활용 지원 어드바이저가 정보 수집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를 활용시에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가 유통 계약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지원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가 미정비 혹은 신분야의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상품화 판로 개척 어드바이저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가노현은 기간산업인 '제조업, 농림업, 관광업' 과 차세대 산업인 건강, 복지, 환경, 교육이 3×3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배치 사업 실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예를 들어 전기 전자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이 중요하고 현내 기업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미착수 기업이 많기 때문에 현 행정뿐만 아니라 변리사회, 발명협회 및 상공관계단체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지역 기업의 지재진흥을 추진할 것이다.

3. 한국

1)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제도

한국에선 특허청, 변리사회, 기술신용보증 기금 등에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1) 지식재산 상담관련 제도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일반 특허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아, 대리인의 선임 없이 민원인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553-5861, <http://www.pcc.or.kr>)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제도 :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출원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후견인이 출원절차,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출원관련 업무 일체를 One-stop 서비스 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042-481-5221~2, 02-568-8155)

-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의처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042-481-8182)

(2)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제도

- 출원료, 등록료, 청구료 면제·감면 제도 : 중소기업, 학생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1544-8080, <http://www.kipo.go.kr>)

- 해외출원비용 지원 제도 : 개인 또는 소기업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 발명의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6, <http://www.kipa.org>)

- 해외출원비용 용자 제도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846, <http://www.kipa.org>)

- 특허법률구조사업 : 특허관련 법률 무료상담,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조정 유도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권고,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심판 및 소송의 무료 변리·변호지원, 심판청구료 감면 및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처 :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http://www.kpaa.or.kr>)

(3) 특허기술의 평가를 위한 지원제도

-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사업 :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02-3459-2885, <http://www.kipa.org>)

- 기술평가인증제도 : 기업의 담보능력이나 매출액이 아닌 기술력을 평가, 그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나 사업성공 전망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이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운영부

(02-789-9463, <http://www.kibo.co.kr>)

- 기술평가보증 :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 심사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2-789-9463, <http://www.kibo.co.kr>)

(4) 사업화자금 지원제도

- 특허담보부대출 :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력과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산업은행 각 영업점

- 신기술창업보육(TBI)자금 : 신기술을 보유·이전받은 기술창업자에게 신기술의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및 전국 주요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창업공간, 인력, 정보, 장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지원실

(02-6009-4358)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압선센터

(02-3459-2844, <http://www.kipa.org>)

2) 지방자치별 지적재산관련 지원제도

다음은 각 지방자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산 관련 지원제도를 권역별로 정리하였다.

| 권역 | 지원제도명 |
|--------------|---|
| 수도권 | U-Healthcare클러스터 사업 [산업지적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
| |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산업지적재산권 출원지원계획] |
| 충청권 | 시민 아이디어 특허등록 지원사업 |
| |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
| | 중소·벤처기업 해외특허출원 대출지원사업 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기술평가료 지원사업 |
| 영남권 |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
| | 특허기술 도우미사업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 |
| 호남, 강원 및 제주권 |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
| | 제주기업 우수기술 및 벤처/이노비즈 인증 지원사업 |

(1) 수도권

- ① U-Healthcare클러스터 사업 [산업지적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 사업주최 : 경기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벤 칭 | 지급상준 | 지원한도 |
|----------------|--------------------------|----------|
|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 건당 100만원이내 (소요비용의 50%) | 200만원 이내 |
| 국외특허 및 PCT출원 | 건당 400만원이내 (소요비용의 50%이내) | 400만원 이내 |

② 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기업자본원기권 · 재재처처획

- 사업주최 : 경기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정기업으로 산업 재산권 취득 희망 기업과 본 사업에 완여하고 있는 연계협력 시 · · 소재기업으로 시 · · 에서 추련을 득한 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신청업체 지원내역 | | |
|---------|-----------|----------|-------------------------------------|
|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국내특허 출원 | 100만원 이내 | 300만원 |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지원 단, 자체출원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 실용신안 출원 | 50만원 이내 | 100만원 | |
| 상표출원 | 10만원 이내 | 50만원 | |
| PCT출원 | 150만원 이내 | 300만원 | |
| 해외특허출원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 |

③ 가민 료이영어 특허등- 지재사업

- 사업주최 : 경기도 성남시 기업지원과
- 지원대상 : 성남시민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 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 업체로서 체납사실이 없는 시민 또는 기업
- 지원내용

| 벤 칭 | 지원한도 | 지원청야 |
|---------|------------|-----------|
| 국내특허 출원 | 100만원 정액보조 | 특허 및 실용신안 |
| 등록비 | 실용신안 출원 | 40만원 정액보조 |

(2) 올분권

중 기업원기권 · 재중용 지재사업

- 사업주최 : 대전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기 : 대전 소재 중소· 구처기업 및 개인발명가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비 고 |
|------|------|-------------|-------------------|
| 대리인 | 특허 | 1건당 70만원 지원 | 1신청인당 연간 3건 이내 지원 |
| 대행출원 | 실용 | 1건당 50만원 지원 | |
| 신청인 | 특허 | 출원 관납료 지원 | |
| 개별출원 | 실용 | 출원 관납료 지원 | |

* 대리인 대행출원시 유의사항 : 대전 소재 변리사 또는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출 원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타 지역 소재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였을 경우 에는 출원 관납료만 지원됨

② ①소출적계기업]외특허 · 재 대 · 지재사업

- 사업주최 : 대전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지역 내 국내특허출원을 참료한 기업으 로서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특허 (타 지적재산권 포함)를 출원 · 등록하려는 중소군벤 처기업
- 지원내용

| 상업당 지원한도 | 대출금리 |
|--------------------------|------------|
| 업체당 3건 이내(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 | 연리 3% 고정금리 |

③ 특허기술 사업화 관천 기술평시아 지재사업

- 사업주최 : 대전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제조업, 제조업관련서 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 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 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술평가료를 지원함
 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술(특허출원기술 의 경우 공개된 특허기술 포함)
 록 국내 · 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으 로부터 특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 도되고, 양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내용

| 벤 칭 | 중소상업중합지원센터 부담 | 업체부담 |
|-----------|-----------------------------|------|
| 특허기술평가수수료 | 50만원 (예비평가료 10만원, 본평가료40만원) | 20만원 |

(3) 디납권

중 기업원기권 지재사업

- 사업주최 : 충산중소기업비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충산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비 고 |
|------|--|-------------|-----------------------|
| 지원한도 | 특허 | 1건당 80만원 지원 | 출원인 기준 연간 3건 이내 지원 |
| | 실용 | 1건당 50만원 지원 | |
| 지원범위 | 산업재산권 출원직접비용 (관납료, 특허법인대행료) | | 여비 등은 제외 |
| 지원자격 | 법인 ⇒ 법인명의 출원 개인사업자 ⇒ 사업자(체명의 출원) ※ 공동출원은 가능함 | | 개인명의 출원제외 |

② 특허기술 도우미사업

- 사업주최 : 부산광역시 산업지원과
- 지원대상 : 지역 내 특허 및 기술 관련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선행특허/기술 정보조사: 전세계 특허/기술 정보조사
 - 특허/기술원문 제공 : 특허기술자료 원문 제공(일부 번역)
 - 특허출원상담 :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 애로사항 자문
 - 특허/기술정보 활용교육 : 정보조사, 특허제도, 특허분쟁, 기술이전 등
 - 상기 지원내용은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 무료지원

③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

- 사업주최 : 김해시 기업지원과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특허정보동향분석
 - 국내외(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선행특허기술 정보 정량분석 제공
 - 업체가 요구하는 특허명세서, 기술자료, 규격자료 등의 원문 제공
 - 특허정보 애로상담(상담실 운영)
 - 특허출원/등록 등 법률 수시 상담(동 사업 자문 변리사)
 - 특허정보 활용교육
 -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정보 활용 등 그룹 및 현장 방문교육 실시

(4) 호남, 강원 및 제주권

①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 사업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지원대상 : 지역내 지식재산권 취득을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건수 | 진흥원부담 | 업체부담 | 지원기준 |
|------------------|----------|-------|------|----------|
|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등 | 업체당 1~2건 | 70% | 30% | 500만원 이내 |

②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 사업주최 :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구 분 | 신청업체 지원내역 | | |
|---------|-----------|----------|-------------------------|
|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국내특허 출원 | 100만원 이내 | 2건 | 업체당 5건 한도 (640만원 가능) |
| 실용신안 출원 | 70만원 이내 | 2건 | |
| 국제특허출원 | 150만원 이내 | 1건 | |

③ 제주기업 우수기술 및 벤처/이노비즈 인증 지원사업

- 사업주최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
- 지원대상 :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GS(Good Software)인증, 벤처/이노비즈 인증취득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IT/CT 관련 업체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사업소진시까지 지원한 업체 순으로 우선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GS(Good Software)인증, 벤처/이노비즈 인증 취득 지원
 - 지원분야 :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 지원범위 : 특허/실용신안/프로그램 10건이내, 벤처/이노비즈 6건 이내
 - 지원금 : 건당 1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특허청 출원료, 변리사 수입료, 등록비 및 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